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

◇ 개정 이유

○ ‘행정규칙상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방안(법제처)’에 따라 “맹인용”을 “시각장애인용”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○ 맹인용 → 시각장애인용(별표 2)